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기상황에 소득자의 자살 시도 추가 >

■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266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위기상황에 소득자의 자살 시도 추가	2

I. 개요

1.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2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민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21.

(3) 회 부 일 : 2025. 3.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구성원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 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위기상황에 소득자의 자살 시도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유로서 위기상황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u><신설></u> 8.·9. (생략)	제2조(정의)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u> 9.·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로 규정¹⁾하면서,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제2조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종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호)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1)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급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삭제
 8.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0.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11. 삭제
 12. 삭제
 13.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14. 삭제

□ 개정안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 상황에 추가하여,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본인 및 다른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법 제2조제9호 및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제10호에 따라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이미 긴급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지원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자살 고위험군	1,641	781	1,568	789	2,036	1,206	1,802	1,152	1,655	1,293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추출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는 현행법 제2조제9호²⁾에 따른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으로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³⁾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법률과 비교할 때, 그 제·개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은 법률에 비해 떨어지므로,

이미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지원의 사유로서 위기상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성이 없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⁴⁾이 ‘자살 시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손목이나 목과 같이 위험한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유해 가스를 흡입한 사람에 대하여 단순 사고인지 아니면 자살 시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4)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긴급지원기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안내’⁵⁾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정의 >

자살시도자

- 약물, 농약, 화학물질 등 자의의 중독 및 노출(의심포함)이 되었거나 실행이 임박한 자
- 칼 등으로 손목이나 목과 같이 위험 부위의 자해흔적이 뚜렷이 확인되었거나 실행이 임박한 자
- 질식, 압박, 고층 또는 움직이는 물체에 투신, 화기, 물에 뛰어드는 행동으로 신체 손상이 발생(의심 포함)하였거나 실행이 임박한 자
- 자해 및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 등에 유해 가스를 흡입하였거나 실행이 임박한 자
- 그 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경찰 등이 자살시도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점에서, 현재 고시에서는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⁶⁾에 따른 자살예방 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⁷⁾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고시에서 이미 ‘자살고위험군(자살 시도자 및 그의가족, 자살의도자 등)을 위기사유로 개정안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된 고시를 통해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점, 위기사유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현행 고시의 위기사유에 가구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구분없이 자살 시도 한 자 등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됨.

또한, 자살 시도 여부를 전문가(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이 아닌 경우 자살 시도에 대한 인정과 해석이 불분명하는 등 관별이 어려워 전문가 추천을 받아 지원함이 적합함.⁸⁾

자살 시도자의 소득이 비정기적(일용직, 프리랜서 근로 등)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⁹⁾

문 의 처

02)6788-5497

8) 전라북도 군산시

9) 경기도 양주시

【참고】	위기상황별 지원 현황
-------------	--------------------

(단위: 건,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분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총계		839,967	100.0	673,333	100.0	491,824	100.0	518,507	100.0	496,535	100
주소득자 소득상실		7,785	0.9	8,077	1.2	6,691	1.4	7,326	1.4	6,912	1.4
질병, 부상		75,800	9.0	79,458	11.8	71,585	14.6	75,312	14.5	69,928	14.1
방임, 학대		300	0.0	465	0.1	448	0.1	459	0.1	399	0.1
가정폭력 (가정내성폭력포함)		3,181	0.4	3,120	0.5	2,890	0.6	3,037	0.6	3,127	0.6
지자체 조례		459,612	54.7	267,182	39.7	183,848	37.4	208,756	40.3	193,081	38.9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곤란		9,668	1.2	6,440	1.0	4,432	0.9	2,727	0.5	2,054	0.4
복지부 장관 고시	이혼	8,063	1.0	10,068	1.5	9,801	2.0	10,120	2.0	10,639	2.1
	단전	2,132	0.3	2,610	0.4	2,837	0.6	3,586	0.7	5,104	1
	휴폐업 (주소득자)	14,826	1.8	18,628	2.8	11,054	2.2	12,846	2.5	17,809	3.6
	휴폐업 (부소득자)	1,072	0.1	961	0.1	593	0.1	316	0.1	505	0.1
	실직 (주소득자)	100,515	12.0	115,799	17.2	66,156	13.5	58,101	11.2	63,562	12.8
	실직 (부소득자)	5,965	0.7	6,848	1.0	3,971	0.8	2,025	0.4	2,057	0.4
	출소	49,513	5.9	50,022	7.4	46,730	9.5	48,476	9.3	53,228	10.7
	노숙	2,555	0.3	1,810	0.3	1,024	0.2	1,112	0.2	1,549	0.3
	화재등 실질적 영업곤란 (주소득자)	693	0.1	423	0.1	381	0.1	386	0.1	304	0.1
	화재등 실질적 영업곤란 (부소득자)	95	0.0	70	0.0	94	0.0	76	0.0	47	0.0
	복지사각지대	55,787	6.6	58,212	8.6	53,497	10.9	64,272	12.4	51,686	10.4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14,324	1.7	16,480	2.4	12,529	2.5	10,760	2.1	9,294	1.9
	자살고위험군	1,641	0.2	1,568	0.2	2,036	0.4	1,802	0.3	1,655	0.3
	코로나19-무급휴직	4,323	0.5	3,363	0.5	558	0.1	119	0.0	-	-
	코로나19-자영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2,100	2.6	21,729	3.2	10,457	2.1	4,159	0.8	49	0.0
범죄피해자	-	-	0	-	0	-	38	0.0	136	0.0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23.7월시행)	-	-	0	-	0	-	1,028	0.2	3,149	1
기타		16	0.0	0	-	212	0.0	1,668	0.3	261	0.0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추출